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침해구제제1위원회

### 결 정

사 건 21진정0349600 해군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시술자 지원배제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해군참모총장

### 주 문

1.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 해군 제○○○기 학사사관후보생(OCS) 조종병과 선발

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해군은 시력교정술을 받은 자의 조종병과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 가. 진정한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지원하고자 했던 항공(조종) 병과는 「해군 특수의무 규정」에 따라 공중근무 I급의 신체검사 판정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해군 특수의무 규정」 [별표 1]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조건)’ 5항에서는 시력교정술을 시술, 처치하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은 공중근무자 II, III급으로 판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군 특수의무 규정」 [별표 1] 제5항 안구 및 안부속기

#### 가. 공중근무 II, III급

##### 3) 각막(Cornea)

마) 각막 성형 또는 LASIK, LASEK, PRK, 각막이식, 드림렌즈 등을 포함하여 각막의 굴절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술 및 처치 또는 그 병력

위 사항은 해군 모집계시판에 사전에 공지하고 있으며, 지원자들이 이와 관련해 문의할 경우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 불합격에 해당한다고 안내한다.

### 다. 참고인(육·공군본부)

1) 육군은 육군규정 161(건강관리규정)에 따라 시력교정시술자라고 하더

라도 일정한 시력을 보유한 자는 합격시키고 있으며, 사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육군규정 161」(건강관리규정) (별표4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5. 안구 및 안부속기. 3) 각막

바) 각막 성형 또는 LASIK, LASEK, PRK, 각막이식, 드림렌즈 등을 포함하여 각막의 굴절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술 및 처치 또는 그병력(단, PRK, LASIK, LASEK 시술한 경우,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수술명 등을 진료 기록지 확인 후 “6. 굴절” 및 “7.원거리시력” 조항에 따라 판정한다.)

2) 공군은 조종사 선발을 위한 모집공고에 신체검사 기준을 공지하고 있으며,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으나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입교 후 시력교정시술을 받고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중근무 신검 I급 항목 중 안과기준(나안 0.5 / 교정 1.0) 미달 저시력자에 대해서는 항공우주의료원 주관 검사에서 시력교정수술(PRK) 적합자로 판정 시, 만 21세 이후에 시력교정수술을 받는 조건에 의한 조건부 선발

**\* 단, 시력교정수술을 이미 실시한 자는 선발 제외**

(중략)

굴절교정술 조건부 합격자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수술시기 : 만 21세 이상, 최소한 1년간 조절마비굴절검사 상 구면렌즈 대응치가 0.50D 초과인 굴절값 변화가 없어야 함
- 2) 굴절 : 어떠한 경선이라도 +0.50 D 또는 -5.50 D 이하, 3.00 D 이하의 난시, 2.50 D 이하의 부동시
- 3) 비행입과 6개월 이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를 통해 공중근무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되면 비행입과 가능
- 4) 다른 안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및 판단

##### 1)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평등권에 대한 일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제 11조의 평등권의 이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아울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개인이 일정한 사적 사안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결정권’이 파생되는바(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등 참조). 자기결정권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인 자기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 참조).

##### 2) 시력교정시술자 조종분야 지원제한이 평등권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인은 0000. 00.경 굴절 교정 레이저 각막 절제술(PRK;

PhotoRefractive Keratectomy)을 시술받은 사람으로, OOOO. O.경 해군 학사 장교(OCS; Officer Candidate School)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해군에서 시력 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은 해군 조종특기 학사장교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선발과정에 지원하지 못하였는바, 이하에서는 해군의 시력교정시술자 제한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해군은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 후에도 근시 혹은 난시가 다시 발생하여 진행되는 근시퇴행(post-LASIK or post-LASEK myopic degeneration)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임무수행 중 시력저하로 콘택트렌즈 혹은 안경착용 등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투력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교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군 및 해외사례에서의 조종병과 선발과정을 살펴볼 때, 해군이 시력교정시술자를 원천적으로 선발에서 배제하고 있는 조치가 합당하고 필수적인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군의 경우, 육군은 시력교정술 시술이후 3개월이 경과하고, 굴절도와 원거리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시력교정시술 여부와 상관없이 조종분야 사관후보생으로 지원 및 선발이 가능하며, 공군은 조종분야 장학생 선발 시 일정조건하에서 시력교정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입교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교 이후 항공우주의료원 주도하에 굴절교정시술만을 허용하고 있는바, 그 합리적 타당성은 별도로 따져 볼 필요가 있음)으로, 해군과 같이 시력교정수술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발과정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군은 시력교정시술자가 일정 시력 이상인 경우 조종사 선발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각 국의 민간 항공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력교정시술자 조종사 채

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 진정인은 대한항공 민간 항공기 조종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여러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조종병과 선발에 있어서 해군만이 시력교정시술자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증명 없이, 시력교정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근시 혹은 난시에 대한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자기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앞선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이후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지정하는 병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 굴절률 등이 기준범위 내에 해당하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종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력교정시술자를 선발절차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비단 이 사건 피진정기관인 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과정 역시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군이 조종특기자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군과 비교할 때 진정인 등에 있어 시력교정 시술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및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군 참모총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

다.

##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